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약관** 



#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약관

2025.06.01 개정

#### 제1조 (약관의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로서 이 계약의 계약자를 말합니다.
-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 약관에서 "연금규약" 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 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 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 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괴반수를 말합니다.
-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 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약관에서 "시 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약 관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건일까지로 합니다.

# 제4조 (가입자의 범위)

- ①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 가입할 때 가입자로 되는 자는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이 근로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근로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된 자를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추가 가입한 가입자의 가입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 가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합니다.
- ④ 가입자는 퇴직 등 연금규약에 정해진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제5조 (수익자)

- ① 이 계약의 수익자(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입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부담금의 납입)

-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 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합니다.

####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 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제8조 제2항에 의한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급여 및 해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압류·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약관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 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 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적립금의 운용)

- ①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 관에 통보합니다.
- ④ 회사는 사용자가 운용하는 적립금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 II, let:safe 이율보증형 I, let:safe 이율보증형 II, let:plus 이율보증형, let:plus 이율보증형 II 포함)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합니다.

#### 제9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사용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을 사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제10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사용자가 청약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12조 (회사의 책임개시 및 종료)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 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4조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 가입한 가입자에 대하여 추가 가입일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가입자가 제4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1) 무배당 확정급여 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부속협정서(이 약관에서 "부속협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14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15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횐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

- 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해지환급금을 이전하는 경우 및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 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회사가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사' 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청구가 지연되어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 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 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에 의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펀드의 선택 및 변경)제5항에 해당하 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중도해지)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 이 있는 경우
-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지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6.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 7. 법 제16조제4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
- 8. 상기 각호의 사유 이외에 관계사의 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⑥ 이 계약이 제4항제5호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매각하여 가입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 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펀드의 선택 및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 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19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 ① 사용자가 제17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자산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 조의 자산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 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 제20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20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금리연동형 적용 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 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 적립시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기준 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 율을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금리연동형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 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3년), 회사채수익률(무보증, AA-, 3년), 통화안정증권수익률(1년)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 기준이율(%)
  - = (운용자산이익률×2 +지표금리×1) / 3

##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 이율이 1.0%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 락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1.0%)로 적립됩니다.

제21조~제23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 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21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 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4년, 5년, 만기지정 식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 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단, 만기지정식의 경우에는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⑤ 제2항의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의 설정은 1년 초과 2년 미만 일 단위, 2년 초과 3년 미만 일 단위, 3년 초과 4년 미만 일 단위 또는 4년 초과 5년 미만 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 제22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적용이 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지정식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인 경우 절사, 6개월 초과인 경우 절상하여 연환산 후 해당기간의 연 단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 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 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 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 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1년초과~1년6개월이하 일 단위)〉

○ 지표금리(%) = ( A1 + B1 + C1 ) / 3

A1 : 국고채(1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1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1년6개월초과~2년6개월이 하 일단위)〉

○ 지표금리(%) = ( A2 + B2 + C1 ) / 3

A2 : 국고채(2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2년6개월초과~3년6개월이 하 일단위)>

○ 지표금리(%) = ( A3 + B3 + C1 ) / 3

A3 :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4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3년6개월초과~4년6개월이 하 일단위)〉

○ 지표금리(%) = ( A4 + B4 + C1 ) / 3

A4 : 국고채(4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4 : 회사채(4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4년6개월초과~5년미만 일 단위)〉 ○ 지표금리(%) = ( A5 + B5 + C1 ) / 3

A5 :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5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제23조(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지화급금)

①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용되는 중포에서어팔는 다음과 끝답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	11개월미만	적용이율×90%	
(1년)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85%	
이율보증형	1년이상~	710010 0504	
(2년)	1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1년1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75%	
010113-1	1년이상~ 2 년미만	적용이율×85%	
이율보증형	2년이상~	710010 0504	
(3년)	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2년11개월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65%	
	1년이상~ 2 년미만	적용이율×75%	
이율보증형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85%	
(4년)	3년이상~	710010050/	
	3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3년11개월이상~4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5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65%	
01011351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75%	
이율보증형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85%	
(5년)	4년이상~	7400100504	
	4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4년11개월이상~5년미만	적용이율	

#### [만기지정식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 이율보증형 보험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 (X월로 환산 하여 적용하되,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로 절상하여 해약해지시점을 적용합니다.

절상하여 해약해지시점을 적용합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11개월미만	적용이율×85%	
이율보증형	11개월이상~	적용이율×95%	
(1년1개월)	1년미만		
(101/112)	1년이상~	적용이율 적용이율	
	1년1개월미만		
이율보증형	1년미만	적용이율×85%	
(1년1개월	1년이상~1년	적용이율×95%	
초과~	(X-1)개월미만	18 -12 - 33 70	
고 2년미만)	1년(X-1)개월	적용이율	
12/	이상~2년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75%	
이율보증형	1년0상~1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85%	
(2년1개월)	1년1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95%	
	2년이상~2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75%	
이율보증형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85%	
(2년1개월	2년이상~	적용이율×95%	
초과~	2년(X-1)개월미만	78 912 733 70	
3년미만)	2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적용이율	
	3년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75%	
(3년1개월)	2년0상~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85%	
(3011112)	2년117월0상~3년미만	적용이율×95%	
	3년이상~3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75%	
(3년1개월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85%	
초과~	3년이상~	적용이율×95%	
4년미만)	3년(X-1)개월미만	78 912 733 70	
45-15)	3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적용이율	
	4년미만	70 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2. 자동분할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 3.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4. 단위보험 만기일 이전에 이율보증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상의 이율보증 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위보 험을 설정하는 경우

기존		변경	
운용관리	자산관리	운용관리	자산관리
기관	기관	기관	기관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이외	최사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부과액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잔여 적 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 하는 경우 또는 잔여 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제26조는 이율보증형 II 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 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24조 (이율보증형 II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 증형 II 적용이율의 보증기간(3년, 4년, 5년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단, 확정급여형제도에서 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 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 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 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 제25조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 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 |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경 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1. 이율보증형॥ 3년 적용이율
  - 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의 적용이율(1년차 적용이율')을 단위보험 설정일 부터 1년 동안 확정 적용
  - 나. 각 단위보험별 '2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 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2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다. 각 단위보험별 '3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 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1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이율보증형॥ 3년 적용이율의 적용 예시] 20X1년 12월 이율보증형 II 3년 공시이율이 2.50%('1년차

적용이율'), 20X2년 12월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이 2,60%, 20X3년 12월 이율보증형 1년형 공시이율이 2,40% 일 때, 20X1년 12월31일 이율보증형 II 3년 가입 후 3년 동안 적용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적용이율	비고
20X1년12월31일~ 20X2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
20X2년12월31일~ 20X3년12월30일		1년차 적용이율(2.50%) 이 이율보증형 2년형 공 시이율(2.60%)보다 낮으 므로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2.60%)적용
20X3년12월31일~ 20X4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1년형(2.40%) 보다 높으므로 1년차 적용 이율(2.50%)적용

#### 2. 이율보증형 II 4년 적용이율

- 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의 적용이율(1년차 적용이율') 을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1년 동안 확정 적용
- 나. 각 단위보험별 '2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3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 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다. 각 단위보험별 '3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2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 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라. 각 단위보험별 '4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1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 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이율보증형॥ 4년 적용이율의 적용 예시]

20X1년 12월 이율보증형 II 4년 공시이율이 2.50%('1년차 적용이율'), 20X2년 12월 이율보증형 3년형 공시이율이 2.60%, 20X3년 12월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이 2.40%, 20X4년 12월 이율보증형 1년형 공시이율이 2.55% 일 때, 20X1년 12월31일 이율보증형II 4년 기입 후 4년 동안 적용이 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적용이율	비고
20X1년12월31일~ 20X2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
20X2년12월31일~ 20X3년12월30일	연2.60%	1년차 적용이율(2.50%) 이 이율보증형 3년형 공 시이율(2.60%)보다 낮 으므로 이율보증형 3년형 공시이율(2.60%)적용
20X3년12월31일~ 20X4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2년형(2.40%) 보다 높으므로 1년차 적용 이율(2.50%)적용
20X4년12월31일~ 20X5년12월30일	연2.55%	1년차 적용이율(2.50%) 이 이율보증형 1년형 (2.55%) 보다 낮으므로 이율보증형 1년형 공시이 율(2.55%)적용

### 3. 이율보증형 II 5년 적용이율

- 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의 적용이율('1년차 적용이율') 을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1년 동안 확정 적용
- 나. 각 단위보험별 '2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4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 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다. 각 단위보험별 '3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3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 율'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라. 각 단위보험별 '4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2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 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 마. 각 단위보험별 '5년차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4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적용이율로, 회사가 공시하는 이율보증형 1년형의 공시이율과 '1년차 적용이 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며,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4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확정 적용

[이율보증형 || 5년 적용이율의 적용 예시]

20X1년 12월 이율보증형 II 5년 공시이율이 2.50%('1년차 적용이율'), 20X2년 12월 이율보증형 4년형 공시이율이 2.60%, 20X3년 12월 이율보증형 3년형 공시이율이 2.40%, 20X4년 12월 이율보증형 2년형 공시이율이 2.55%, 20X5년 12월 이율보증형 1년형 공시이율이 2.45% 일 때, 20X1년 12월31일 이율보증형 II 5년 가입 후 5년 동안 적용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적용이율	비고
20X1년12월31일~ 20X2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
20X2년12월31일~ 20X3년12월30일	연2.60%	1년차 적용이율(2.50%) 이 이율보증형 4년형 공 시이율(2.60%)보다 낮으 므로 이율보증형 4년형 공시이율(2.60%)적용
20X3년12월31일~ 20X4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3년형(2.40%) 보다 높으므로 1년차 적용 이율(2.50%)적용
20X4년12월31일~ 20X5년12월30일	연2.55%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2년형(2.55%) 보다 낮으므로 이율보증형 2 년형 공시이율(2.55%)적용
20X5년12월31일~ 20X6년12월30일	연2.50%	1년차 적용이율(2.50%)이 이율보증형 1년형(2.45%) 보다 높으므로 1년차 적용 이율(2.50%)적용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 [이율보증형 |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 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 사는 매월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 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 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 이율보증형Ⅱ 3년 >

○ 지표금리(%) = ( A3 + B3 + C1 ) / 3

A3 :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 이율보증형Ⅱ 4년 >

○ 지표금리(%) = ( A4 + B4 + C1 ) / 3

A4 : 국고채(4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4: 회사채(4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 이율보증형Ⅱ 5년 >

○ 지표금리(%) = ( A5 + B5 + C1 ) / 3

A5 :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5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제26조(이율보증형 ॥ 상품의 해지환급금)

① 이율보증형 II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 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 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12 0 11 122 13 123 11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	1년미만	적용이율×65%	
II	1년이상~ 2 년미만	적용이율×75%	
(3년)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85%	
이율보증형	1년미만	적용이율×55%	
시뮬포증성	1년이상~ 2 년미만	적용이율×65%	
II (4년)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75%	
(4년)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85%	
	1년미만	적용이율×45%	
이율보증형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55%	
II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65%	
(5년)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75%	
	4년이상~5년미만	적용이율×8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2. 자동분할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 3.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4. 단위보험 만기일 이전에 이율보증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상의 이율보증 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위보 험을 설정하는 경우

기존		변경	
운용관리	자산관리	운용관리	자산관리
기관	기관	기관	기관
2117 VIOI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이외	의^[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부과액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잔여 적 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 하는 경우 또는 잔여 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제29조는 let:safe 이율보증형 I 에 관한 사항으로 let:safe 이율보증형 I 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27조 (let:safe 이율보증형 I 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4년, 5년, 만기지정식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 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 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 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단, 만기지정식의 경우에는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⑤ 제2항의 let:safe 이율보증형 I 만기지정식의 설정은 1년 초과 2년 미만 일 단위, 2년 초과 3년 미만 일 단위, 3년 초과 4년 미만 일 단위 또는 4년 초과 5년 미만 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 제28조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의 적용)

①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을

- 적용합니다. 이때,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지정식의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인 경우 절사, 6개월 초과인 경우 절상하여 연환산 후 해당기간의 연 단위 let:safe 이율보증형 I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let:safe 이율보증형 |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 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 사는 매월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let:safe 이율보증형 |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let:safe 이율보증형 |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하도로 합니다.

[let:safe 이율보증형 I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 술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let'safe 이율보증형 I , 만기지정식(1년초과~1 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1 + B1 + C1 ) / 3

A1 : 국고채(1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1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2년 let:safe 이율보증형Ⅰ, 만기지정식(1년6개월초 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 지표금리(%) = ( A2 + B2 + C1 ) / 3

A2: 국고채(2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3년 let:safe 이율보증형 | , 만기지정식(2년6개월초 과~3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3 + B3 + C1 ) / 3

A3 :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4년 let:safe 이율보증형 Ⅰ , 만기지정식(3년6개월초 과~4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4 + B4 + C1 ) / 3

A4: 국고채(4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4 : 회사채(4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5년 let:safe 이율보증형 | , 만기지정식(4년6개월초
과~5년미만 일단위) ⟩

○ 지표금리(%) = ( A5 + B5 + C1 ) / 3

A5 :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5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제29조(let:safe 이율보증형 I 상품의 해지환급금)

① let:safe 이율보증형 I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 시점까지 정요되는 추도해지이용은 다음과 갖습니다

THE THE SET OF THE PROPERTY OF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let:safe	11개월미만	적용이율×92.5%	
이 <del>율보증형</del> l (1년)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	
let:safe	1년미만	적용이율×87.5%	
이율보증형 I	1년0냥~1년1개월미만	적용이율×95%	
(2년)	1년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lasta a fa	1년미만	적용이율×77.5%	
let:safe	1년이상~ 2 년미만	적용이율×87.5%	
이율보증형 I	2년0냥~2년1개월7만	적용이율×95%	
(3년)	2년1개월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let:safe	1년미만	적용이율×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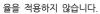
	1년이상~ 2년미만	적용이율×77.5%
이율보증형 I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87.5%
(4년)	3년0냥~3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3년1개월0상-4년미만	적용이율
let:safe	1년미만	적용이율×57.5%
	1년이상~ 2년미만	적용이율×67.5%
이율보증형 I	2년이상~ 3년미만	적용이율×77.5%
(5년)	3년이상~ 4년미만	적용이율×87.5%
	4년0상4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4년17월0상-5년미만	적용이율

[만기지정식 let:safe 이율보증형 I]

만기지정식 let:safe 이율보증형 I 보험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 여 월단위 (X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되,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서는 1개월로 절상하여 해약해지시점을 적용합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11개월미만	적용이율×87.5%
let:safe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95%
이율보증형 (	1년이상~	
(1년1개월)	1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let:safe	1년미만	적용이율×87.5%
이율보증형 I	1년이상~	적용이율×95%
(1년1개월	1년(X-1)개월미만	10 12
초과~ 2년미만)	1년(X-1)개월이상~ 2년미만	적용이율
<u> </u>	2년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77.5%
	1년이상~	
let:safe	1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87.5%
이율보증형 I	1년11개월이상~	3480185050
(2년1개월)	2년미만	적용이율×95%
	2년이상~	적용이율
	2년1개월미만	
let:safe	1년미만	적용이율×77.5%
이율보증형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87.5%
(2년1개월	2년이상~	적용이율×95%
초과~	2년(X-1)개월미만	
3년미만)	2년(X-1)개월이상~ 3년미만	적용이율
	3년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67.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77.5%
Late C	2년이상~	
let:safe	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87.5%
이율보증형 I (3년1개월)	2년11개월이상~	적용이율×95%
(그런 1/11절)	3년미만	
	3년이상~	적용이 <u>율</u>
	3년1개월미만	
Late C	1년미만	적용이율×67.5%
let:safe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77.5%
이율보증형 I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적용이율×87.5%
(3년1개월 초과~	3년이상~ 3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95%
소파~ 4년미만)	3년(X-1)개월미년 3년(X-1)개월이상~	
12 12/	4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57.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67.5%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77.5%
let:safe	3년이상~	적용이율×87.5%
이율보증형 I	3년11개월미만	기증의원^0/.370
(4년1개월)	3년11개월이상~	적용이율×95%
	4년미만	10 12:33%
	4년이상~	적용이율
	4년1개월미만	적용이율×57.5
	1년미만	역용이율×37.3 %
let:safe	1년이상~2년미만	76 적용이율×67.5%
이율보증형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77.5%
(4년1개월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87.5%
초과~	4년이상~	
5년미만)	4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95%
	4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5년미만	극당이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



- 1.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2. 자동분할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 3.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4. 단위보험 만기일 이전에 이율보증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상의 이율보증 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위보험 을 설정하는 경우

기존		변경	
운용관리	자산관리	운용관리	자산관리
기관	기관	기관	기관
중나 이이	중나	회사	회사
회사 이외	회사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부과액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잔여 적립 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 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제32조는 let:safe 이율보증형 II에 관한 사항으로 let:safe 이율보증형 II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30조 (let:safe 이율보증형 II 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letsafe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4년, 5년, 만기지정식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letsafe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 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 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 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단, 만기지정식의 경우에는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let:safe 이율보증형 비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let:safe 이율보증형 비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⑤ 제2항의 let:safe 이율보증형 Ⅱ 만기지정식의 설정은 1년 초과 2년 미만 일 단위, 2년 초과 3년 미만 일 단위, 3년 초과 4년 미만 일 단위 또는 4년 초과 5년 미만 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 제31조 (let:safe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의 적용)

- ① let:safe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let:safe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let:safe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let:safe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지정식의 let:safe 이율보증형 II 적용 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인 경우 절사, 6개월 초과인 경우 절상하여 연환산 후 해당기간의 연 단위 let:safe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 [let:safe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let:safe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let:safe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let:safe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 술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let:safe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1년초과~1 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1 + B1 + C1 ) / 3

A1 : 국고채(1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1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2년 let:safe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1년6개월초 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2 + B2 + C1 ) / 3

A2 : 국고채(2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3년 let:safe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2년6개월초 과~3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3 + B3 + C1 ) / 3

A3 :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4년 let:safe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3년6개월초 과~4년6개월이하 일단위) 〉

이 지표금리(%) = ( A4 + B4 + C1 ) / 3

A4 : 국고채(4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4 : 회사채(4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5년 let:safe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4년6개월초 과~5년미만 일단위) ⟩

○ 지표금리(%) = ( A5 + B5 + C1 ) / 3

A5 :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5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제32조(let:safe 이율보증형 II 상품의 해지환급금)

① let:safe 이율보증형 II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 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let:safe	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이 <del>율보증</del> 형॥ (1년)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
let:safe	1년미만	적용이율×90%
이율보증형॥	1년0상~1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2년)	1년11개월0상~2년미만	적용이율
lot:cofo	1년미만	적용이율×80%
let:safe	1년이상~ 2년미만	적용이율×90%
이율보증형॥	2년0상~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3년)	2년11개월0상~3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70%
let:safe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80%
이율보증형॥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90%
(4년)	3년0상~3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3년11개월0상~4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60%
lastanta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70%
let:safe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80%
이율보증형 II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90%
(5년)	4년0상~4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5%
	4년11개월이상-5년미만	적용이율

### [만기지정식 let:safe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 let:safe 이율보증형॥ 보험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 (X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되,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로 절상하여 해약해지시점을 적용합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let:safe	11개월미만	적용이율×90%
이율보증형॥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95%
(1년1개월)	1년0상~1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let:safe	1년미만	적용이율×90%
이율보증형 II (1년1개월	1년이상~1년(X-1) 개월미만	적용이율×95%

초과~ 2년미만)	1년(X-1)개월이상~ 2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80%
let:safe	1년이상~1년17월P만	적용이율×90%
이율보증형॥	1년17월0상-2년미만	적용이율×95%
(2년1개월)	2년이상~2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80%
let:safe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90%
이율보증형 II (2년1개월	2년이상~2년(X-1) 개월미만	적용이율×95%
초과~ 3년미만)	2년(X-1)개월이상~ 3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70%
let:safe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80%
이율보증형॥	2년0상~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90%
(3년1개월)	2년111월0상-3년미만	적용이율×95%
	3년이상~3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70%
let:safe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80%
이율보증형॥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90%
(3년1개월 초과~	3년이상~3년(X-1) 개월미만	적용이율×95%
4년미만)	3년(X-1)개월이상~ 4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60%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70%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80%
let:safe	3년0상~3년1개월미만	적용이율×90%
이율보증형 II (4년1개월)	3년11개월이상~ 4년미만	적용이율×95%
	4년이상 ~4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60%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70%
let:safe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80%
이율보증형॥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90%
(4년1개월 초과~	4년이상~ 4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95%
5년미만)	4년(X-1)개월이상~ 5년미만	적용이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2. 자동분할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 3.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4. 단위보험 만기일 이전에 이율보증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처감한 기간 이상의 이율보증 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위보험 을 설정하는 경우

기존		변	경
운용관리	자산관리	운용관리	자산관리
기관	기관	기관	기관
헤시 이이		회사	회사
회사 이외	회사	회사 이외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부과액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잔여 적립 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 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제36조는 let:plus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let:plus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33조 (let:plus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leti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4년, 5년, 만기지정식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leti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사용자는 let:plus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만기시 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let:plus 이율보증형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 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을 let:plus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제34조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 ①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 일까지 매 1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 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 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 월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let:plus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 술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 1년 let:plus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1년초과~1년6 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1 + B1 + C1 ) / 3
- A1 : 국고채(1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1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 2년 let:plus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1년6개월초 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2 + B2 + C1 ) / 3
- A2 : 국고채(2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 3년 let:plus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2년6개월초 과~3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3 + B3 + C1 ) / 3
- A3 :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4년 let:plus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3년6개월초 과~4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4 + B4 + C1 ) / 3
- A4 : 국고채(4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4 : 회사채(4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 5년 let:plus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4년6개월초 과~5년미만 일단위) >
- 지표금리(%) = ( A5 + B5 + C1 ) / 3
- A5 :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 B5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제35조(let:plus 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① let:plus 이율보증형은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회사 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let:plus	11개월미만	적용이율×80%
이율보증형 (1년)	11개월이상~ 1년미만	적용이율
let:plus	1년미만	적용이율×75%

이율보증형	1년0상-1년1개월미만	적용이율×85%
(2년)	1년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lotinlus	1년미만	적용이율×65%
let:plus	1년이상~ 2 년미만	적용이율×75%
이율보증형	2년0냥~2년1개월미만	적용이율×85%
(3년)	2년1개월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55%
let:plus	1년이상~ 2 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75%
(4년)	3년0상-3년1개월미만	적용이율×85%
	3년1개월이상-4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45%
lotinlus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55%
let:plus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75%
(5년)	4년0상4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85%
	4년117월0상-5년미만	적용이율

#### [만기지정식 let:plus 이율보증형]

만기지정식 let:plus 이율보증형 보험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 (X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로 절상하여 해약해지시점을 적용한다.

기개월도 설상하여 해약해시시점을 석용한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let:plus	11개월미만	적용이율×75%	
이율보증형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85%	
(1년1개월)	1년이상~1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let:plus	1년미만	적용이율×75%	
이율보증형	1년이상~	적용이율×85%	
(1년1개월	1년(X-1)개월미만	7891270370	
초과~	1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2년미만)	2년미만		
let:plus	1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1년0냥~1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75%	
(2년1개월)	1년117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85%	
(2011)	2년이상~2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let:plus	1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1년이상~년미만	적용이율×75%	
(2년1개월	2년 이상~	적용이율×85%	
조과~	2년(X-1)개월미만	13-12,0570	
고의 3년미만)	2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36 16/	3년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55%	
let:plus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2년0냥~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75%	
(3년1개월)	2년17월이상~3년미만	적용이율×85%	
	3년이상~3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55%	
let:plus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75%	
(3년1개월	3년이상~	적용이율×85%	
초과~	3년(X-1)개월미만	10 12 03 /6	
4년미만)	3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4년미만		
	1년미만	적용이율×4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55%	
let:plus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65%	
이율보증형	3년0냥~3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75%	
(4년1개월)	3년17월이상-4년미만	적용이율×85%	
	4년이상~	적용이율	
	4년1개월미만	10 12	
	1년미만	적용이율×45%	
let:plus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55%	
이율보증형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65%	
(4년1개월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75%	
초과~	4년이상~	적용이율×85%	
고의 5년미만)	4년(X-1)개월미만	13-12-0570	
JE 12/	4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5년미만	10 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2. 자동분할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 3.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4. 단위보험 만기일 이전에 이율보증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상의 이율보증 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위보험 을 설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부과액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잔여 적립 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 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36조(let:plus 이율보증형 상품의 "유지보너스" 및 "유지보너 스 이율"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단위보험별로 약관 제17조(중도해지)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또는 상품변경 없이 만기일까지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지보너스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유지보 너스"를 단위보험 만기일에 let:plus 이율보증형 단위보험 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letiplus 이율 보증형 단위보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에는 해당일에 "유지보너스"를 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③ "유지보너스 이율"은 「let:plus 이율보증형 단위보험 설정일 의 적용이율, 의 5%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하여,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let:plus 이율보증형의 유지보너스 이율 적용예시〉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이 20x2년 12월 4.88%일 때, 20x3년 12월 30일 let:plus 이율보증형 가입 후 중도해지 없 이(수수료 납입을 위한 적립금 매각 제외) 만기일까지 유지하 는 경우 적용되는 유지보너스 이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년만기 상품의 경우

경과기간	적용이율	유지보너스 이율
20X2.12.30~ 20X3.12.30	4.88%	0.24%

제37조~제40조는 let:plus 이율보증형II에 관한 사항으로 let:plus 이율보증형II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37조 (let:plus 이율보증형 II 의 단위보험)

-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합니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let:plus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4년, 5년, 만기지정식 등)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let:plus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 다
- ③ 사용자는 let:plus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설정일 이후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let:plus 이율보증형॥ 만기일까지 새로 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 일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을 let:plus 이율보증형॥의 새로 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제38조 (let:plus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의 적용)

- ① let:plus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let:plus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을 적용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let:plus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let:plus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let:plus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let:plus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let:plus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 술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let:plus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1년초과~1 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1 + B1 + C1 ) / 3

A1 : 국고채(1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1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2년 let:plus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1년6개월초 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2 + B2 + C1 ) / 3

A2 : 국고채(2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3년 let:plus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2년6개월초 과~3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3 + B3 + C1 ) / 3

A3 :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4년 let:plus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3년6개월초 과~4년6개월이하 일단위) 〉

○ 지표금리(%) = ( A4 + B4 + C1 ) / 3

A4 : 국고채(4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4 : 회사채(4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5년 let:plus 이율보증형Ⅱ, 만기지정식(4년6개월초 과~5년미만 일단위) ⟩

○ 지표금리(%) = ( A5 + B5 + C1 ) / 3

A5 :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5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제39조(let:plus 이율보증형 II 상품의 해지환급금)

① let:plus 이율보증형 II 는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회사 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let:plus	11개월미만	적용이율×82%
이율보증형 II	11개월이상~	적용이율
(1년)	1년미만	극공의표
let:plus	1년미만	적용이율×77%
이율보증형 II	1년0냥~1년1개월미만	적용이율×87%
(2년)	1년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lotinius	1년미만	적용이율×67%
let:plus	1년이상~ 2년미만	적용이율×77%
이율보증형 II	2년0냥~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87%
(3년)	2년117월0상-3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57%
let:plus 이율보증형 II	1년이상~ 2 년미만	적용이율×67%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77%
(4년)	3년0상~3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87%
	3년1개월0상-4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47%
مريا مخصار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57%
let:plus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67%
이율보증형 II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77%
(5년)	4년0상-4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87%
	4년11개월이상-5년미만	적용이율

### [만기지정식 let:plus 이율보증형II]

만기지정식 let:plus 이율보증형 II 보험의 연 미만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 (X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로 절상하여 해약해지시점을 적용한다.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let:plus	11개월미만	적용이율×77%

이율보증형॥	11개월이상~1년미만	적용이율×87%
(1년1개월)	1년이상~1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let:plus	1년미만	적용이율×77%
이율보증형॥	1년이상~	78412.7777
(1년1개월	1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87%
(T건T/III) 초과~	1년(X-1)개월이상~	
2년미만)	2년미만	적용이율
2만만)	2년미년 1년미만	적용이율×67%
let:plus	1년이상~1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77%
이율보증형॥		
(2년1개월)	1년11개월이상~2년미만	적용이율×87%
	2년이상~2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let:plus	1년미만	적용이율×67%
이율보증형 II	1년이상~년미만	적용이율×77%
(2년1개월	2년 이상~	적용이율×87%
초과~	2년(X-1)개월미만	15 12 57 70
3년미만)	2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적용이율
J L-1L)	3년미만	70 12
	1년미만	적용이율×57%
let:plus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67%
이율보증형॥	2년이상~2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77%
(3년1개월)	2년117월0상~3년미만	적용이율×87%
	3년0상~3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57%
let:plus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67%
이율보증형॥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77%
(3년1개월	3년이상~	710010 070
초과~	3년(X-1)개월미만	적용이율×87%
4년미만)	3년(X-1)개월이상~	710010
	4년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47%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57%
let:plus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67%
이율보증형॥	3년0상~3년11개월미만	적용이율×77%
(4년1개월)	3년17월0상·4년미만	적용이율×87%
(121112)	4년이상~	
	4년1개월미만	적용이율
	1년미만	적용이율×47%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57%
let:plus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67%
이율보증형॥	3년이상~4년미만	
(4년1개월	3년이성~4년미만 4년이상~	적용이율×77%
초과~		적용이율×87%
5년미만)	4년(X-1)개월미만	
	4년(X-1)개월이상~	적용이율
	5년미만	l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2. 자동분할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 3.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 4. 단위보험 만기일 이전에 이율보증기간에서 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상의 이율보증 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위보험 을 설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부과액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잔여 적립 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 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40조(let:plus 이율보증형॥ 상품의 "유지보너스" 및 "유지보 너스 이율"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단위보험별로 약관 제17조(중도해지)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또는 상품변경 없이 만기일까지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지보너스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유지보 너스"를 단위보험 만기일에 letplus 이율보증형॥ 단위보험 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letiplus 이율 보증형 II 단위보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유지보너스"를 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③ "유지보너스 이율"은 「let:plus 이율보증형 II 단위보험 설정 일의 적용이율」의 3%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여,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let:plus 이율보증형Ⅱ의 유지보너스 이율 적용예시〉 let:plus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이 20x2년 12월 4.88%일 때, 20x3년 12월 30일 let:plus 이율보증형Ⅱ 기업 후 중도 해지 없이(수수료 납입을 위한 적립금 매각 제외) 만기일까지 유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유지보너스 이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 니다.

\* 1년만기 상품의 경우

경과기간	적용이율	유지보너스 이율
20X2.12.30~ 20X3.12.30	4.88%	0.15%

### 제41조~제48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 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41조 (실적배당형 용어의 정의)

- ①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②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③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지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④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⑤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 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제42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주식형 (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순자산의 60%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상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주식(이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자산 은 투자적격등급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 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 채권 관련파생상품 및 유동성자산 등에 40%이내로 투자합니 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합 니다. 주식은 순자산의 9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플러스혼합형40 (주식 편입비율 40% 이하) 주식을 순자산의 40%이내 투자하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자산은 국내투자적격등급 채권, 주식관련파생상품, 채권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합니 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 3. 플러스혼합형20 (주식 편입비율 20% 이하) 주식을 순자산의 20%이내 투자하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자산은 국내투자적격등급 채권, 주식관련파생상품, 채권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80%이상 투자합니 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 4. 플러스혼합형10 (주식 편입비율 10% 이하) 주식을 순자산의 10%이내 투자하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자산은 국내투자적격등급 채권, 주식관련파생상품, 채권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90%이상 투자합니 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 5. 채권형 (채권 편입비율 90% 이상) 국내투자적격등급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의 90%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 자산은 유동 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 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합니다.

#### 제43조 (펀드의 선택 및 변경)

- 시용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42
   조의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 ⑤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적립금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가 차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 ⑥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사용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44조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 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 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분배 대상 펀드를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이때, 재분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이때, 재분배 실행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③ 사용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 재배 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평가 및 운용)

- ① 실적배당형 펀드는 제42조에서 정한 펀드유형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운용실적이 적립금 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시가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 ③ 실적배당형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부담 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및 운용합니다.
- ④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제47조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⑤ 사용자는 제43조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제46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frac{ 당일 특별계정 순자산가치}{ 특별계정 총 좌수}$ 

### 제47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① 회사는 실적배당형 펀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1. 운영보수

구분		적립금 기준 보수율	
운	주식형	0.000876712%	

	(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연 0.32%)
	플러스 <del>혼</del> 합형40	
	(주식 편입비율 40% 이하)	
영	플러스 <del>혼</del> 합형20	0,000602740%
보	(주식 편입비율 20% 이하)	(연 0.22%)
수	플러스혼합형10	
	(주식 편입비율 10% 이하)	
	채권형	0.000328767%
	(채권 편입비율 90% 이상)	(연 0.12%)

#### 2 투자일임보수

2. <del>-</del> - 1 = 1 = 1 = 1			
	구분	적립금 기준 보수율	
	주식형		
	(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투	플러스혼합형40		
자	(주식 편입비율 40% 이하)		
일	플러스 <del>혼</del> 합형20	0.000684932%	
임	(주식 편입비율 20% 이하)	(연 0.25%)	
보	플러스혼합형10		
수	(주식 편입비율 10% 이하)		
	채권형		
	(채권 편입비율 90% 이상)		

#### 3 수탁보수

<u> </u>			
	구분	적립금 기준 보수율	
	주식형		
	(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플러스혼합형40		
수	(주식 편입비율 40% 이하)		
탁	플러스혼합형20	0.000054795%	
보	(주식 편입비율 20% 이하)	(연 0.02%)	
수	플러스혼합형10		
	(주식 편입비율 10% 이하)		
	채권형		
	(채권 편입비율 90% 이상)		

#### 4. 사무관리보수

4. 시구선니エ구			
	구분	적립금 기준 보수율	
	주식형		
	(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사	플러스혼합형40		
무	(주식 편입비율 40% 이하)		
관	플러스혼합형20	0.000027397%	
리	(주식 편입비율 20% 이하)	(연 0.01%)	
보	플러스 <del>혼</del> 합형10		
수	(주식 편입비율 10% 이하)		
	채권형		
	(채권 편입비율 90% 이상)		

- 5.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 보수 등)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비용을 포함하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기증권매매 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제48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에 미달하 는 경우
- 3.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폐지사 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43조에 따른 펀드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펀드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합니다.

#### 제49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50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산관리업무 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51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 4. 천재지변, 유기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 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사무처리
  -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 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 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5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 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제53조 (인감신고)

- ① 사용자는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54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증서 · 거래인감 등을 분실 · 도난 ·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2. 사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 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5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 제57조 (분쟁의 조정)

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기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 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제59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 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6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 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③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4일부 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③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4일부 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부속협정서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③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4일부 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별지1)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부속협정서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③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4일부 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④ 시행일 전에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 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지1)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부속협정서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③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4일부 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④ 시행일 전에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 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지1)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부속협정서



####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부속협정서

\_\_\_\_\_\_(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롯데손 해보험(주)(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_\_\_\_년 \_월 \_일 체결한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약관(이 협정서에서 "약 관"이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협정서에 의하여 약관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 를 징수합니다.

####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일 전체 적립금자산평가액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일 계상하며, 매 계 약해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 일로부터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계상액을 연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해당일에 사용자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매 계약해당일에 적립금에 서 취득하는 것을 위칙으로 합니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2조에 의한 적립금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이전신청일, 약관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약관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적립금이전신청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적립금자 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때, 이 계약과 회사가 체결한 다른 계약 사용자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이 계약과 회사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적립금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정합니다. 단,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회사가 확인한 날의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합산	수수료율 (연)		
적립금자산 평가액	원리금보장형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원리금비보장형 (실적배당형)	
100억미만	일 0.000438356%	일 0.000410959%	
100억미인	(연 0.16%)	(연 0.15%)	
100억이상~	일 0.000410959%	일 0.000383562%	
200억미만	(연 0.15%)	(연 0.14%)	
200억이상~	일 0.000383562%	일 0.000356164%	
300억미만	(연 0.14%)	(연 0.13%)	
20000171	일 0.000356164%	일 0.000328767%	
300억이상	(연 0.13%)	(연 0.12%)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제도시행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분사합병 등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 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제도시행 경과년수 를 포함합니다.

제도시행 경과년수	할인율
3차년도,4차년도	10%
5차년도~6차년도	15%
7차년도~8차년도	20%
9차년도~10차년도	25%
11차년도~12차년도	30%
13차년도~14차년도	35%
15차년도~	40%

5.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과 같이 연합단 체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연합단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연합단체 할인율

20%

- 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 항목표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합니다.)의 대분류 가 동일한 협회, 공제회, 연합회 산하법인으로 증빙 서류(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가 동일한 협회, 공제회, 연합회 명부에 등록된 것을 입증할 명부(회 원증, 출자증권 등) 사본)를 제출한 경우
- 나. 연합단체 대상의 계약수는 3개 이상(이하 "최소계약수" 라 합니다) 이어야 하며, 최소계약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최소계약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합단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회사는 제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를 연합단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기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취소 또는 종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나면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록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수료 할인 해택을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 수수로 할인을 적용반는경우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업우대 할인율	적용기간
사회적기업 <sup>1)</sup>	50%	매년
중소기업 <sup>2)</sup>	10%	매년

- 1)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2)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장기 할인, 연합단체 할인 및 기업우대 할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합산한 할인율은 최대 50%를 넘지 않습니다.
- ※ 장기, 연합단체, 기업우대 할인 중복적용시 계산방법
   : 할인후 수수료율 = 할인전 수수료율 × [1-MIN(50%, 장기 할인율 + 연합단체 할인율 + 기업우대 할인율)]
- 8.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 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 의 105/100이내의 적립금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9.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정수할 수 있습니다.
-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적립금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 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3조 (계약서의 작성·보관)

주소: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대표이사: 주소:			(인)
회사: 대표이사:			(인)